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 국가R&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특성·상황 등에 따라 법령상 기술료 사용기준과 연구현장 집행의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수익의 일부를 납부함에 있어 관련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제재처분 공개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재처분 공개 관련 사항을 개정함과 함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에 따라 마련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 제도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제재조치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구부정행위 중징계에 따른 국가R&D 과제선정 불이익 (안 제12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로 인해 소속 기관에서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은 경우 국가R&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지식재산권 포기 시 승인의무 폐지 (안 제34조제4항)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을 삭제함

다. 지식재산권 관리 운영규정의 마련 (안 제34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자체적인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제도 개선 (안 제39조제1항)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기업 등)이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경우 납부액 상한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매출액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

마. 합리적 기술료 사용기준 마련 (안 제41조제2항)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의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특성·상황
및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의 성과활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관이
기관 구성원 등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바. 공개대상 제재처분 기준 삭제 및 공개 예외조항 신설(안 제62조)

공개 대상이 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기준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

사. 제재처분 감경 재량의 확대 (안 별표 6 및 별표 7)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른 합리적인 제재처분을 위해서는 처분청의
폭넓은 재량권 행사가 필요함에 따라, 현행 1/2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제재처분 감경의 범위를 90/100으로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로 인해 소속 기관에서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34조제4항 전단 중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2항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1조제2항 및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성과활용에 기여한 자로 인정하는 자에 대해 성과활용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기관 구성원 등과 협의하여 정한 합리적인 기준

제6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33조제7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별표6 참여제한 처분기준 1항 일반기준 중 나목 감경기준의 본문 중 “2분의 1”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별표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1항 일반기준 중 나목 감경기준의 본문 중 “2분의 1”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① ~ ④ (생략)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 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 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1. ~ 2. (생략) <u><신설></u>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u> <u>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u> <u>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u> <u>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u> <u>개발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u> <u>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u> <u>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u> <u>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u> <u>는 행위로 인해 소속 기관에</u> <u>서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u> <u>직의 징계를 받은 경우</u>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 ③ (생략)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
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
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
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
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
를 준용한다.

<신설>

<신설>

제39조(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
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
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경우 -----

-----.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
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
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
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
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제5
항의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
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
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생략)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 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 2. (생략)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생략)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2항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 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성과 활용에 기여한 자로 인정하는 자에 대해 성과활용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기관 구성원 등과 협의하여 정한 합리적인 기준

4. (현행과 같음)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제재처분 결정을 말한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신 설>

② (생략)

③ (생략)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삭 제>

② 법 제33조제7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나. 감경기준

현행	개정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u>2분의 1</u>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u>100분의 90</u>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나. 감경기준

현행	개정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u>2분의 1</u>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u>100분의 90</u>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

연 락 처

(044) 202 - 6974